

제3차산업경제위원회
2018.09.07(금)11:00

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8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31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(안 제5조)
- 나. 안 제5조의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한 기술혁신 실태조사(안 제6조)
- 다.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(안 제7조)
- 라.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(안 제8조)
- 마.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사항(안 제9조, 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'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.